3191-11203428-15351501

무배당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확정급여형)

약

관

3191-11203428-15351501

무배당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확정급여형)

제1장 공통사항

제1조(총칙)

3191-11203428-15351501 제2장(퇴직연금)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성립일로부터 계약의 전부 해지일까지를 말하며, 제3장(화재·배상책임) 및 제4장(단체상해)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 ① 보험계약자는 제2장(퇴직연금)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장(화재·배상책임) 및 제4 장(단체상해)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제2장(퇴직연금), 제3장(화재·배상책임) 및 제4장(단체상해) 각 장에서 정한 사항 상호간 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해당 장에만 한정하여 적용 합니다.

제3조(계약의 소멸 또는 해지)

- ① 제2장(퇴직연금)이 소멸 또는 전부 해지되는 경우에도 제3장(화재·배상책임) 및 제4장 (단체상해)은 소멸 또는 해지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3장(화재·배상책임) 및 제4장(단체 상해)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제2장(퇴직연금)이 소멸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갱 신이 불가합니다.
- ② 제3장(화재·배상책임) 또는 제4장(단체상해)이 소멸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2장(퇴직연금) 은 소멸 또는 해지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퇴직연금

[보통약관]

제1관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조(용어의 정의)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입자"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기초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사용자(이하 제4조(보험계약자)에서 정하는 "계약자"라 합니다)가 실시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4. "급여"라 함은 이 제도로부터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5. "수급권 확인"이라 함은 가입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조(보험세목)

- 이 계약의 보험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금리연동형
 - 2. 이율보증형
 - 3. 실적배당형

제3조(단체 및 피보험단체)

- ① 이 계약에서 "단체"라 함은 법 제13조에 의해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단체"라 함은 동일 계약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계약잣)(535,150)

-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제5조(피보험자의 자격)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 가입시 피보험자로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 야 하며, 그 단체의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3426-15351501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가 사망한 때에는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 니다.

제7조(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①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의 통지 또는 지시(이하 "통지"라 합 니다)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대해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 1. 부담금의 통지
 - 2. 계약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 3. 급여 등의 지급지시
 - 4. 세금 등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의 통지
 - 5. 이전에 따른 계약자의 적립금 이전지시
 - 6. 적립금의 반화통지
 - 7. 기타 이 제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서의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회사에게 계약목적상 부적절 혹은 법령 등에 저 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경우 회사는 통지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2. 부담금의 수령
 -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5. 급여 등의 지급
 - 6. 기타 이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0조(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청약서 사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

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사본을 전자 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사본을 드린 것 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3191-11203426-1535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자산관리 퇴직연금 보험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자산관리 퇴직연금 보험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하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계약에 관한 사항
 - 2. 부담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
 -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기타사항
- ② 협정서는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 체결이후 계약자는 연금규약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제1 항 각 호(제3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 니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이 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 23조(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계약이전에 따른 해지시 회사는 제24조(해지환급금)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다른 자산관리 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제13조(피보험자의 추가가입)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피보험자의 자 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단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된 자를 추가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단체에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의 추가 가입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가 피 보험단체에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합니다.

제14조(피보험자의 탈퇴)

13426-1º

계약자는 퇴직 및 인수ㆍ합병ㆍ분사ㆍ관계사전출 등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 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제15조(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상속인을 포함합니다)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 A26-15351501 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 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 는 경우
-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부담금의 종류)

- 이 계약의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표준부담금은 장래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2. 보충부담금은 과거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3. 특별부담금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4.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또는 이 제도 이외의 제도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제18조(부담금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3조(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추가 가입일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함 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5조(피보험자의 자격)에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피보 험자에 대한 계약 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9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0조(소멸시효)

피보험자의 급여 청구권, 부담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제2관 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1조(해지시 구비서류)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해지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해지 청구서(회사양식)
- 2. 해지환급금 수령대상 피보험자 명부(회사양식) 또는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명부 사보

제22조(적용이율의 적용)

-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매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 ② 이율보증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매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제23조(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수익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의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실적배당형의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를 반영하여 급여(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금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글로벌이머징혼합형의 경우는 10영업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세목별 적용이율(단, 실적배당형의 경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4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금리연동형에서 동일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일이 계약일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단, 이율보증형의 경우는 시장가격조정률(별표1 참고)이 함께 적용된 금액입니다.

제3관 이율보증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25조(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회사의 협정서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설정된 각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4관 실적배당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26조(운용보수)

- ①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②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③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④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 운용지시의 이행, 운용 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⑤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27조(납입된 부담금의 처리)

- ①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지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 합니 다
- ② 제1항에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부담금납입일 부터 특별계정 이체 3191-11203426-1538 일까지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이체합니다.

제28조(적립금에 대한 계산)

- ① 이 계약의 적립금의 계산은 부담금과 적립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수수료(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 수)를 차감합니다.

제29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이 계약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 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우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름 할 수 없습니다.

제30조(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릅니다.
 - 1. 주식형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 순자산의 60%이상 투자하고, 채권 및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40%이내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2. 배당주혼합형 :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내재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장기 성장성이 높 은 종목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초과 수익 추구
 - 운용전략(채권):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 하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 3. 인덱스혼합형 : 주식(코스피 주식만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KOSPI 지수 수익률(시장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지수에 포함된 종목에 분산 투자. 주식시장 예측이 어려울 때 저렴한 운용보수로 장기적인 수익률 증가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 하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 4. 그로스혼합형 :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장기 성장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는 기업 및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초과 수익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 5. 삼성그룹주혼합형: 삼성그룹관련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삼성그룹관련 주식관련파생 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3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7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삼성그룹과 관련된 주식, 삼성그룹과 관련된 지수의 성과를 추종 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투자하여 삼성그룹의 성과를 추종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 하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 6. 글로벌이머징혼합형: 해외주식, 해외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 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주식) : 성장성 높은 이머징 시장관련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ETF) 투자 및 국가 및 업종 분석을 통한 종목 발굴을 통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추구
 - 운용전략(채권) :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및 은행채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신용리스크 분석을 통한 우량 회사채 선별 투자
- 7. MMF[재간접]: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 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및 단기 유동성 상품(CP, CD 등)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 0% 의대가 되도록 운용함)
 - 운용전략 : 국공채를 포함한 우량 채권 투자를 통해 안정성 및 유동성을 갖춘 포트 폴리오 구축 후 CP 및 기타 현금성 자산(CD, 정기예금 등) 투자를 통한 초과 성과 추구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

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 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1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29조(펀드의 유형)에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②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③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펀드의 일부 및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계약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
-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4조 (특별계정의 폐지)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단, 글로벌이머징 혼합형의 경우는 "변경요구일+10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⑤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단, 글로벌이머징혼합형의 경우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제32조(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한함)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 법률이 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3조(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장당 기준가격 = <u>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u>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수수료(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4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 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하는데 드ե 비용은 3191-11203426-1538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5조(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 니다.
 -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30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 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그 밖의 사항

제36조(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7조(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퇴직연금 보험세목별 특별계 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 니다.
- ② 퇴직연금 보험세목별 특별계정의 자산의 종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하는 것으 로 합니다.

제38조(인감신교) 15951501

- ① 계약자는 계약자와 운용관리기관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제반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 급여 지급 및 기타 업무처리상 인감도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

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연금전환특약의 적립금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191-11203426-15351501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계약일부터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적립금에(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년, 2년 이율보증형 MVA]

MVA = max
$$\left[1 - \left(-\frac{1+i_{j}}{1+i_{h}} \right)^{n+\epsilon/\eta}, 0 \right]$$

- MVA의 최대한도는 5%로 함

[3년, 4년, 5년 이율보증형 MVA]

MVA = max
$$\left[1 - \left(\frac{1+i_j}{1+i_h+0.5\%} \right)^{n+\epsilon/n}, 0 \right]$$

- MVA의 최대한도는 10%로 함

n: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ε: 잔여보증기간의 일단위기간

η : 당해 보험년도의 일수(365일 또는 366일)

i; : j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적용이율

i_h: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i_h = i_{h-1} + (i_{h+1} - i_{h-1}) \times \frac{\epsilon'}{\eta \times \eta'}$$

 i_{h-1}: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적용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적용이율 별 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 단, 잔여보증 기간이 적용되는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i_{h+1}"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합니다.

i_{h+1}: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적용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적용이율 별 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

n': i_{h-1} 보증기간부터 i_{h+1} 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기간

ε': ϳμω 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일단위기간

i, >i, 이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 = 0